

제 431 호

1974. 2. 9.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편집 : 문화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보

차 례

◎ 조 계	
제 816 호 :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	3
제 817 호 : 서울특별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추진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	3
◎ 규 칙	
제 1341 호 : 서울특별시 임시 고용원 규정 개정규칙	18
제 1342 호 : 외국인에 대한 유흥음식시설 면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	21
제 1343 호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외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규칙	21
◎ 고 시	
제 3 호 : 서울특별시 사료성분발소고시	30
제 12 호 : 도시계획 (전기 공급설비: 변전소)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	32
제 13 호 : 도시계획 (시장)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32
제 14 호 : 도시계획 (유수지) 시설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33
제 15 호 : 재개발사업시행과 지적승인고시	33
제 16 호 : 도시계획 (유수지) 시설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34
◎ 공 고	
제 19 호 :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전면허시험변경공고	35
제 23 호 : 판지 처분공고 (망우토지 구획정리지구)	35
제 24 호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증생산지정업해제지정공고	36
제 26 호 : 쓰레기특별정소제외 (비수거) 지역공고	36
◎ 사 령	37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조 례	합 수 있다.
<p>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부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1974년 2월 6일 서울특별시감</p>	<p>분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천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p>
<p>◎서울특별시조례제 816 호</p>	<p>1974 2. 7.</p>
<p>서울특별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p>	<p>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교육감 하점성</p>
<p>서울특별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서울특별시조례제 817 호</p>
<p>제 2조제 1항 제 3 호중 "부과당시의 토지회시가" 다음에 "(공사를 준공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날을 기준으로 한다)"를 삽입한다.</p>	<p>서울특별시중학교무시험입학추천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p>
<p>제 9조중 제 6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부담금한도에</p>	<p>제정 1971. 2. 17 조례제 658 호 개정 1974 2. 7 조례제 817 호</p>
<p>제 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0조 (부과회시기등) ①부과회시 토지가액조사 및 부과는 공사준공일로부터 9월이내에 하여야 한다.</p>	<p>서울특별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추천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을 분할 부과하거나 또는 공사를 수계공사로 나누어 부과 징수</p>	<p>제 3조 (학교군) 학교군 및 중학구수는 10학군 1학구로 하고, 학교군별, 중학구별, 국민학교 및 중학교는 별</p>

표와 같다.

별표중 다음과 같은 개정한다.

1. 1학군 도봉지역 국민학교 남자란 및 여자란에 "노원"·"유"·"김위지역"·"국민학교 남자란 및 여자란"·"영곡"을 각각 추가한다.
2. 2학군 진뉴지역 중학교 남자란중 "북대병설"·"유"·"진뉴"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진뉴지역중학교 여자란에 "진뉴"·"유"·"공동지역"·"국민학교 남자란 및 여자란"·"명신"·"유"·"민복지역"·"국민학교 남자란 및 여자란"·"무동"·"유"·"중광"·"유"·"진뉴지역"·"국민학교 남자란 및 여자란"·"석광"·"신당"·"유"를 각각 추가한다.
3. 3학군 공동지역 국민학교 남자란 및 여자란에 "용봉"·"유"·"신수"·"화양지역"·"국민학교 남자란 및 여자란"·"용마"·"유"·"성수"·"를"·"유"·"각각"·"추가"·"하고"·"중구지역"·"국민학교 남자란 및 여자란"·"의"·"일신"·"유"·"각각"·"삭제"·"한다."
4. 5학군 중학교 남자란에 "영동"·"유"·"국민학교 남자란 및 여자란"·"은현"·"유"·"신동"·"유"·"각각"·"추가"·"한다."
5. 6학군 한남지역 국민학교 남자란

및 여자란의 "신동"·"유"·"각각"·"삭제"·"한다."

6. 7학군시흥, 대림지역 중학교 남자란중 "대림"·"유"·"신림"·"으로"·"명칭"·"을"·"변경"·"하며"·"시흥, 대림지역"·"국민학교 남자란"·"의"·"영일, 구로남, 동구로"·"를"·"삭제"·"하고"·"당산구로지역"·"국민학교 남자란"·"에"·"영일, 구로남, 동구로"·"를"·"추가"·"한다"
7. 8학군 마포지역 국민학교 남자란 및 여자란중 "문화"·"를"·"매일"·"로"·"각각"·"명칭"·"을"·"변경"·"하고, 연희지역"·"국민학교 남자란 및 여자란"·"에"·"수안"·"연가"·"를"·"불광지역"·"국민학교 남자란 및 여자란"·"에"·"역촌"·"유"·"신도"·"북한산"·"유"·"각각"·"추가"·"하며, 공동지역"·"국민학교 남자란 및 여자란"·"의"·"서대문"·"유"·"각각"·"삭제"·"한다."
8. 오류학구를 9학군으로 변경하고 중학교 남자란에 "우신"·"유"·"국민학교 남자란 및 여자란"·"에"·"세곡"·"유"·"각각"·"추가"·"한다."
9. 화곡학구를 10학군으로 변경하고 중학교 남자란에 "화곡"·"유"·"중학교 여자란"·"에"·"공할"·"유"·"각각"·"추가"·"한다"

부 칙

이 조령은 1974학년도 부터 시행한다.

학군내 지역별중학교 및 국민학교일람										
학군별	세부지역	남 가				여 가				비 고
		중 학교	국민학교	중 학교	국민학교					
1 학군	공동지역	삼 선 동 성 교 명 보 성 용 문 경 신 동구시외부속	해 화 경 경 은 암 삼 선 배 원 경 덕 우 촌 은 석 안 암 성신시외부속	성 신 정 신 안 성 성신시외부속	해 화 창 경 은 암 호 계 삼 선 배 원 경 덕 우 촌 은 석 안 암 성신시외부속	7 교	11 교	4 교	11 교	
	경남지역	홍 이 교 리 성 성 홍 익	영 덕 승 덕 성 복 홍 익	동 구 교 리	순 덕 청 덕 성 복 홍 익	고려중 덕 (남녀공학)	2 교	4 교	2 교	4 교
	도봉지역	신 일 영 춘 서 라 창 동	도 창 봉 동 화 계 수 유	도 봉 수 유 정 의 영 훈	도 봉 창 동 화 계 수 유	상동(남녀공학) 영분()				

학군별	세분지역	남 자		여 자		비 고
		중 학교	국민 학교	중 학교	국민 학교	
		수 유	구 이 상 천 삼 양 티 아 영 훈 한국신병설 신 창 노 원	성 압 창 총	우 이 송 천 삼 양 미 아 영 훈 신 창 한국신병설 노 원	
		5 교	12 교	6 교	12 교	
	장위지역	염 광 광 운 남 대 승 문 승 덕	송 인 승 태 상 위 철 제 승 국 철 국	염 광 창 준	송 배 장 위 철 제 승 인 철 국	연 광 (남녀공학)
		4 교	6 교	2 교	6 교	
	계	18 교	33 교	14 교	33 교	
2 학군	공동지역	대 광 성 일 동 대 서울시대부속 광 신 경 회	황 송 송 동 용 종 신 종 신 인	동 경 덕 회 정 화	창 송 동 용 종 종 신 신 신 신 두 암 암 인	

학군별	세분지역	남 자		여 자		비 고
		중 학교	국 민 학교	중 학교	국 민 학교	
			신 선 동 홍 능 파 홍 파 방 청 양 광 대 회 회 경 서 울 삼 육 명 신		신 선 동 홍 능 파 홍 파 방 청 양 광 대 회 회 경 서 울 삼 육 당 신	
		6 교	14 교	3 교	14 교	
	면 북 지역	강 안 면 중 화 중 면 북 금 중 랑 등 중 화 대 중 강 북 육	면 안 면 중 화 중 금 성 구 등 랑 광 화 대 강 삼 육 담 동	면 북 면 혜 송 영 안	면 북 면 중 금 중 화 대 중 삼 육 담 동	
		4 교	8 교	5 교	8 교	
	전 능 지역	전 능 전 성 량 건 취 위 경	전 능 전 건 답 실 취 위 건	동 대 동 덕 리 목 취 위 건	문 화 문 화 건 건 경 능	전 능 전 능 답 실 취 위 건

학급별	세분지역	남 자		여 자		비 고
		중 학교	국민 학교	중 학교	국민 학교	
			이 문 신 답 석 관		이 문 신 답 석 관	
		3 교	8 교	4 교	8 교	
	계	13 교	30 교	12 교	30 교	
3 학급	공동지역	덕 수 한 양 광 회 심 동 배 명 한 영	강 총 광 회 서울사대부속 홍 인 무 학 동 명 행 당 사 근 한 양 교 대 부속 응 분	무 학 한 양 행 당 서울사대부속	강 총 광 회 서울사대부속 홍 인 동 명 무 학 행 당 사 근 한 양 서울교대부속 응 분	
		6 교	11 교	4 교	11 교	
	중구지역	백 제 동 북	남 대 문 남 산 회 영 회 지 명 리 라 리 계 성	제 성 승 회	중 남 대 문 남 산 회 영 명 리	무 문 산 회 지 라

학군별	세부지역	남 자		여 자		비 고
		중 학교	국민 학교	중 학교	국민 학교	
			송 최 동 복 송 무		계 송 성 동 외 동 복	
		2 교	9 교	2 교	9 교	
금호지역	장 중 대 경	금 호 금 옥 금 동 금 산 금 북 금 구	호 옥 옥 수 산 북 구	육 수 금 호	금 호 금 동 금 금 금 천	호 옥 수 산 북 구
		2 교	6 교	2 교	6 교	
성수과양 지역	수도사대부속 성 수 진 국	경 인 장 차 방 신 수도사대부속 성 공 성 수	동 복 안 양 장 천 동 마 수	수도사대부속 성 명 성	경 연 장 자 광 광 신 신 수도사대부속 성 용 성 수	수도사대부속 (남여공학) 안 양 장 천 수도사대부속 동 마 수
		3 교	10 교	3 교	10 교	
	계	13 교	36 교	11 교	36 교	
4 학군	천호지역	천 호 동 신	구 천 천 호	천 호 영 파	구 천 천 호	천 호 중 (남여공학)

학군별	세부지역	남 자		여 자		비 고	
		중 학교	국민학교	중 학교	국민학교		
			계 여 경기도서부 성 내 2 교 5 교		계 여 경기서부 성 내 2 교 5 교		
	송파지역	성 문 1 교	왕 북 대 왕 내 3 교	성 문 1 교	왕 북 대 왕 내 3 교	(남여공학)	
	계	3 교	8 교	3 교	8 교		
5 학군		영 동 1 교	신 중 년 남 년 주 신 동 는 천 5 교	영 동 1 교	신 중 년 남 년 주 신 동 는 천 5 교		
	계	1 교	5 교	1 교	5 교		
6 학군	공동지역	송 용 신 한 신 용	실 산 린 강 산 용	후 삼 남 파 남 양 강 정 강 산 신 용 신 명 신 광	용 신 산 광 명 한 신 용 신 성 효 후	청 금 남 한 신 용 신 성 효 후	파 양 정 강 산 광 신 창 암

학군별	세부지역	남 자		여 자		비 고
		중 학교	국민 학교	중 학교	국민 학교	
			효 창 용 산		삼 삼 상 명 용 산	
		5 교	11 교	3 교	12 교	
	함남지역	단 국 오 산	용 안 한 남 서 빙 보 광 이 맥 원	보 성	용 안 한 남 서 빙 보 광 이 맥 원	
		2 교	5 교	1 교	5 교	
	북서지역	동 양 상 대 부 삼 속 상 도	남 성 은 로 본 중 강 남 명 수 대 대 중앙 대학 부속 사 당	강 계 부 속 상 도	남 성 은 중 본 남 강 명 수 수 대 대 중앙 대학 부속 사 당	
		3 교	7 교	2 교	7 교	
	강남지역	영 동 포 봉 천	노 량 전 상 도 봉 천 신 밀 은 천 관 천 영 학	강 남 신 량 봉 천	노 량 전 상 도 봉 천 신 밀 은 천 관 천 영 학	

학군별	세부지역	남 자		여 자		비, 교
		중 학교	국민 학교	중 학교	국민 학교	
			영 본		영 본	
		2 교	8 교	3 교	8 교	
	계	12 교	31 교	9 교	32 교	
7 학군	공동지역	장 훈	우 신	영 동	우 신	
		성 남	도 립	포 대	도 립	
		강 남	영 신	방 대	영 신	
			대 방		대 방	
			중 증		중 증	
			전 절		전 절	
			남 동		남 동	
			삼 옥		삼 옥	
		3 교	9 교	2 교	9 교	
	당산, 구로 지역	영 도	량 산	도 립	방 산	
당 산		당 증	봉 영	당 증		
		구 로	영 등	포 일	영 등	
			구 토	남 구	구 토	
			동 구	로 동	동 구	
		2 교	7 교	2 교	7 교	
	시흥, 대남 지역	동 일	문 창	동 일	문 창	동 일 중 (남 여 공학)
신 님		탐 동	문 일	탐 동		
강 서		문 성	일 립	문 성		
		남 강	시 흥	서 장	시 흥	

학군별	세부지역	남 자		여 자		비 고			
		중 학교	국민 학교	중 학교	국민 학교				
		4 교	4 교	4 교	4 교				
	여 의 도	여 의 도	여 의 도	여 의 도	여 의 도				
	계	10 교	21 교	9 교	21 교				
8 학군	공동지역	중 중 수 위 대	양 동 송 분 농	덕 수 미 금 교 계	수 송 동 화 동 농	성 정 명 성 분 명 철	덕 수 미 금 교 계	수 송 동 화 동 농	
	세 검 정 지 역	청 보	운 인	배 철 세 경 삼영사대부속	능 운 경 북	배 화 삼영사대부속	배 화 삼영사대부속	능 운 경 북 삼영사대부속	
	불 광 지 역	대 영 대 인	신 천 성 창	죽 안 안 봉 불 대 관 은 신	립 산 상 제 광 조 현 회 일	능 예 물 선 선 서	명 일 일 일 원	복 안 안 홍 불 대 갈 은 신	문 산 상 역 광 조 현 회 일
		5 교	6 교	5 교	6 교				
		2 교	5 교	2 교	5 교				

학군별	상부지역	남 자		여 자		비 고
		중 학교	국민학교	중 학교	국민학교	
			계 활 원 서 강		홍 성 익 산 지 광 원 장 서	
		5 교	11 교	5 교	12 교	
	마포지역	양 문 경 수 배 동 마	성 명 서 도 문 도 포 신 마 한 국 구 화	방 현 서 외 일 장 덕 선 석 도 화	창 덕 동 소 문 광 산 유 신 다 한 국 구 화	래 일 석 외 석 석 도 화
		7 교	11 교	3 교	10 교	
		계 28	55	23	55	
9 학군		유 우	한 신 개 세	유 척 봉 복	유 고 개 신	유 석 봉 극
		2 교	4 교	1 교	4 교	
10 학군		공 화	항 국 개 종	화 정 화 봉	화 곡 개 향	화 경

39-16: 제 431 호

시

보

1974. 2. 9

학군일	세부지역	남 자		여 자		비 고		
		중 학교	국민학교	중 학교	국민학교			
10학군			영 화 열 선 오	친 목 상 경 국		양 화 영 선 오	친 목 상 경 국	
	계	2 교	7 교	2 교	7 교			
상계학구		새 현	상 계 1. 상 계	상 계	상 계	상 계 연 선	상 계 촌 상 계	
	계	1 교	3 교	1 교	3 교			
	총 계	103 교	233 교	86 교	234 교			

학군별 중학교현황							
학군별	구 립		공 립		사 립		계
	남	여	남	여	남	여	
1 학 군			4	3	14	11	32
2 " "	1		8	3	4	9	25
3 " "		1	4	5	9	5	24
4 " "			1	1	2	2	6
5 " "			1	1			2
6 " "			7	5	5	4	21
7 " "			5	6	5	3	19
8 " "			5	4	23	19	51
9 " "				1	2		3
10 " "			1	2	1		4
상제 " "				1	1		2
계	1	1	36	32	66	53	189

39-18 제 431 호

시

보

1974. 2. 9

규 칙

◎ 서울특별시규칙제 1341 호

서울특별시 임시고용원규정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임시고용원규정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74. 2. 6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직법표도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임시고용원 보수지급기준표

등급	보수의한계	직	종
1	11,000	정비원, 차량정리원	
2	12,000	사환, 전달부	
3	13,000	전달부	
4	14,000	정비원	
5	15,000	전달부	
6	16,000	잡 부	
7	17,000	기관수	
8	18,000	안내원, 타자원, 기관수, 경리원, 감사원, 관리원, 경비원, 미용사, 수위, 청소원, 시험원, 원예사, 전달부, 직공, 정비원, 잡부, 전공, 청부, 취사부, 행정보조원	
9	19,000	기사, 경리원, 사감, 차량정비원, 행정보조원, 전공, 청부, 타자원, 경리원, 교환원, 감사원, 수위, 시험원, 운전원	
10	20,000	감시원, 가족제회요원, 결핵관리요원, 민원보조원, 전공, 행정보조원	
11	21,000	교도원, 기관수, 기사, 기계공, 경비원, 보모, 수위, 시험원, 원예사, 안내원, 의료요원, 잡부, 행정보조원	
12	22,000	교도원, 기관수, 기사, 감시원, 가족제회요원, 기계공, 보모, 사감, 시험원, 정비원, 전공, 타자원, 행정보조원	

동 합	보수의 한계	직 종
13	23,000	기사, 경리원, 관리원
14	24,000	기사, 기계공, 운전원, 조결수, 직공, 정비원, 전공, 행정보조원, 가족제회요원, 결핵관리요원
15	25,000	기관수, 기사, 결핵관리요원, 기계공, 관리원, 상담원, 연예사, 아동복지지도원, 운전원, 직공, 전공, 행정보조원
16	26,000	기사, 간호원, 가족제회요원, 기계공, 운전원, 직공, 전공
17	27,000	기사, 상담원, 행정보조원
18	28,000	기계공, 운전원, 직공, 정비원
19	29,000	안내원, 직공, 청원경찰
20	30,000	가족제회요원
21	31,000	기관수, 기계공, 직공, 전공, 축산원, 행정보조원
22	32,000	기계공
23	33,000	교도원, 기계공, 사서요원, 안내원
24	34,000	운동장지도원, 행정보조원
25	35,000	구호협회간사, 상담원, 조결수, 직공, 정비원, 신문위원
26	36,000	기사, 시험원, 운전원, 무량아전문직원, 직공, 정비원, 전문위원, 행정보조원
27	37,000	교도원, 기사, 상담원, 행정보조원
28	38,000	기사
29	39,000	기사
30	40,000	연예사
31	41,000	정비원, 기관수, 기계공, 전공
32	42,000	기관수, 전공
33	43,000	연예사
34	44,000	기사
35	45,000	교도원, 기사, 연예사, 전공

등급	보수의 한계	직	종
36	46,000	의료요원	
37	47,000	연예사	
38	48,000	연예사, 전문위원	
39	49,000	기사, 정비원	
40	50,000	기관수, 기사, 기계공, 전문위원, 전공	
41	51,000	교도원, 연예사, 정비원	
42	52,000	정비원	
43	53,000	정비원	
44	54,000	수의사, 연예사	
45	55,000	기사	
46	56,000	기사	
47	57,000	연예사	
48	60,000	전공	
49	61,000	운전원, 정비원	
50	62,000	연예사	
51	63,000	전공	
52	64,000	승부감독	
53	65,000	연예사	
54	68,000	연예사	
55	70,000	외사	
56	71,000	외사	
57	82,000	외사	
58	87,000	연예사	
59	90,000	연예사	
60	110,000	연예사	
61	113,000	외사	

규 칙

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p>.외국인에 대한 유통음식제면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74년 2월 6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p>	<p>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p> <p>제 2 조중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동조에 제 3 항 및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 서울특별시 규칙 제 1342 호</p> <p>외국인에 대한 유통음식제면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폐지규칙</p> <p>서울특별시규칙 제 1103 호(70.9.28) 외국인에 대한 유통음식제면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칙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p>	<p>① 감독자의 감독불응분에 대한 성제는 별표 2에 의한다.</p> <p>② 징계의결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성규정 제 3 조 제 2 항 및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 107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을 참작할 수 있다.</p> <p>제 4 조 본문중 "별표"를 "별표 1"의 "로 하고 동조제 1 호중 "(3 개 항목이상)"을 "(2 개 항목이상)"으로 하며 동조 제 2 호중 "경입"은 감봉" 다음에 " 3 월 이상"을 삽입한다.</p>
<p>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974년 2월 6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p>	<p>제 6 조중 다음과같이 신설한다.</p> <p>제 6 조 (국가공무원에의 준용) 서울특별시의 근무하는 4 급이하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로 되결에 있어서도 제 2 조 제 1 항의 기준을 준용한다.</p>
<p>◎ 서울특별시 규칙 제 1343 호</p> <p>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상개정규칙</p>	<p>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별표 1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과 면	감 봉	전 책	
공 동 사 람	1. 부부조배위반				
	가. 부제결근			월 3일이 상 전 책 이 상	2 일 훈계
	나. 지참, 무단이석			"	1 회 경고, 2 회 훈계
	다. 출장미귀 근무태도불량			"	월 2 회 훈계
	라. 출근부미 날인			"	
	마. 출근부 내리 날인			월 2 회 이 상 전 책 이 상	1 회 훈계
	바. 당숙제 불이행			전 책 이 상	
	2. 근무자세 불중실				
	가. 민원서류 및 기합문서처리 지연(고의)			전 책 이 상	
	나. 직부유기		감봉이상		
	다. 민원인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친절로 불의			전 책 이 상	
	3. 품위손상				
	가. 사기, 절도, 강도, 강간	0			
	나. 도 박		감봉이상		
	다. 축 칩	0			사실상동거
	라. 음주주태		감봉이상		
	마. 고급유종장(1급업소)환입			전 책 이 상	
	바. 폭력, 가혹행위			전 책 이 상	
사. 직무와 관련하여 저실한 비밀누설		감봉이상	경미한태의비 문서에 대한 누설은 전책		
아. 소정절차를 서침이없이 타직 겸직			전 책 이 상		

구 분	경 제 사 유	경 제 기 준			비 고
		과 면	감 봉	건 책	
	차. 부장부단정 차. 기타 품위손상행위 (위제질서 문란등)			주의 2회 이상 전책이상	
	4. 업무상 횡령 및 배임행위				
	가. 공금 (·물) 횡령	0			
	나. 공금유용		감봉이상		
	다. 공과금의 위법 부당부과 및 감면				
	5. 승 수 퇴				
	가. 사선수퇴	0			
	나. 사후수퇴	0			
	다. 금품건달				
	6. 문서에 관한 위법 및 부당행위				
	가. 공문서위조, 변조	0			
	나. 공문서파기		고 의 중대한과실	과 실	
	다. 공문서망실				
	라. 허위문서등 및 부명서작성 및 동행사		감봉이상		정상배려가 적외 적용
	마. 공생증서 불실기재	0			
	바. 관인의 부정사용	0			
	7. 직권남용				
	가. 직권 남용으로 타인의 권리침해 및 권리행사 방해				
	나. 직명사칭				
	8. 행정운영상의 위법부당				
	가. 직무 명령위반			전책이상	

구 분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과 면	감 룡	전 채	
	나.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노조활동등) 다. 기타 중대한 과오 9. 회계관리외 부정징 가.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집행 나. 물품 및 공사의 무단분해발주 다. 위법, 부당한계약 및 증서발행 라. 위약금의 부정수 및 기타 손실초액 마. 예산외 위법 부당집행 바. 공과금외 부당관리 사. 기타 회계상의 부정 10. 물품, 재산 및 시설물관리 부정징 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물품시 설물 훼손 나. 물품재산의 망실 다. 판용차 남용 11. 공사의 집행 및 감독부적정 가. 공사감독일지 불 비치 나. 중요공사 부당 준공검사 다. 공사장 무단이설 라. 설계과다 마. 설계상 과오 바. 기타 공사집행상의 부정행위	0	감봉이상	전채이상	
		100만원 이 상	10만원 - 100만원이 하	10만원	

구분	정제사유	정제기준			비고
		과민	감용	전적	
분야별	1. 장구 행정				
	가. 민원중개인 및 대리업자들 동안 민원서류의 접수 (민원서 류의 부당접수)		감동이상		
	나. 민원서류 사전 가접수		•		
	다. 경당한 사유없이 수차에 결한 보관서류 요구		•		
	2. 세무 행정				
	가. 과세 누락		•		
	나. 과세 지연		•		
	○ 유흥음식세 업종 적용의 부적정		•		
	○ 정액 지수제상의 고정지 수 설정의 부적정		•		
	○ 업황도결정의 부적정		•		
	○ 위장 휴·폐업소 은폐	○			
	○ 과세물건조사 및 지압조 사의 불철저			견적이상	
	○ 세무실사 불철저			•	
	다. 제대강처리의 불철저			•	
	라. 세납처리 태만			•	
마. 납세담보미설정 및 부적정			•		
바. 자동차세 등록압류확탁내안			•		
사. 지적등초본 발행의 부적정					
아. 가옥대장 분실등제	○				

구 분	정 세 사 유	정 세 기 준			비 고
		과 원	감 룡	선 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 대책 ○ 무허가건물철거부적정 (형식적철거) ○ 무허가건물 주인허가 부적정 ○ 향후결과 적발사항 통보 불실 	○			문책기준 철도예외함.
	<p>6. 상 수 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급수량 과다과소 검침 나. 검침보조원 채용 다. 수정조정 및 고장양수기 장기방치 라. 양수기 조작 마. 불량 및 고장양수기 확인소통 바. 양수기 부당교체 사. 불통전 방치 아. 무허가 급수업자 방치 자. 조배위반사항 조치부적정 	○	감룡이상	6개월 6개월 3개월 이상	
	<p>7. 산업행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부정계량기 단속 불철저 나. 급수우등 부정도측 묵인 다. 말도살 방치 라. 입야개간 허가 부적정 마. 입야개간준공검사처리부적정 바. 국공유 입야판리 대책 	○			

<발표 2>

감 복 과 문 책 기 준

구	분	계장급	과장급	비고
직접 감독하에 있는 부하직원이 견책 상당의 징계사유 발생된 경우		3명	혼계	
		5명 이하	견책	혼계
		6명 이상	감봉	견책
직접 감독하에 있는 부하직원이 감봉 상당의 징계사유 발생된 경우		3명	견책	혼계
		5명 이하	감봉	견책
		6명 이상	파면	감봉
직접 감독하에 있는 부하직원이 파면 상당의 징계사유 발생된 경우		3명	감봉	견책
		5명 이하	파면	감봉
		6명 이상	파면	감봉

※ ○ 직접 감독하에 있는 직원수가 20명이상일 경우는 위 기준의 3분의 1을 증가한 수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비율의 단수는 1인으로서 한다

- 구장급 이상에 대한 문책은 문책사단에 따라 조정 적용
- 견책, 감봉, 파면등이 결합할 때에는 위 기준에 따라 조정 적용
- 혼계지는 서말서 정취
- 통상기간은 1년으로 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 사료성분달소고시제 8호

등록 번호	공장명	소재지	대표자	사 료		
				종 류	명 칭	용 도
21-1	대원사료장사	종남동 355-1	강익현	배합사료	씨폐지용배합사료	생후대략9개월이되는씨폐지
-2	"	"	"	"	산란말기용배합사료	초산후대략 36주이상
-3	"	"	"	"	부리 일러 후기	부화후대략4주이상(육성용하이)
-4	"	"	"	"	부리 일러 전기	부화후대략 4 주까지
-5	"	"	"	"	젖소용배합사료	생후대략 18 개월이상(1호)
-6	"	"	"	"	중병아리배합사료	부화후대략 7 ~ 12 주
-7	"	"	"	"	어린병아리	부화 후 대략 6 주 까지
-8	"	"	"	"	산란초기용	초산후부화대략20주까지(산란초기)
-9	"	"	"	"	"	(산란중재)
-10	"	"	"	"	큰병아리 배합사료	부화후대략13주~초산까지(산란)
-11	"	"	"	"	식물성박류기초배합사료	식물성박류기초배합사료
-12	"	"	"	"	어분기초 배합사료	어분기초 배합사료
-13	"	"	"	"	산란중기용배합사료	초산후대략 21 ~ 35 주
-14	"	"	"	"	젓매기 폐지배합사료	생후 대략 2 개월 까지
-15	"	"	"	"	어린 돼지 배합사료	생후대략 2 ~ 4 개월
-16	"	"	"	"	중돼지 배합사료	생후대략 4월이상(비육)은 및 8월까지 씨폐지
-17	"	"	"	"	농축배합사료	농 축 배 합 사 료

산토광리법 시행규칙 제 8 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료성분 등
 목사량이 감소되었기 고시한다.

사 료 성 분 량				유효 기 간	비 고
최 소 량	최 대 량	조 성 유	조 회 분		
12.0 %이상	2.0 %이상	11.0 %이하	11.0 %이하	72.4.30 ~ 74.2.29	74.2.5자발소
14.0 "	2.0 "	8.0 "	13.0 "	"	"
16.0 "	2.5 "	6.0 "	10.0 "	"	"
19.0 "	2.5 "	6.0 "	9.0 "	"	"
13.0 "	2.0 "	13.0 "	12.0 "	"	"
16.0 "	2.5 "	7.0 "	10.0 "	"	"
19.0 "	2.5 "	6.0 "	9.0 "	"	"
15.0 "	2.0 "	7.0 "	13.0 "	72.6.22 74.6.21	"
15.0 "	2.0 "	7.0 "	13.0 "	"	"
12.0 "	2.5 "	7.5 "	10.0 "	"	"
35.0 "	3.0 "	8.0 "	7.0 "	"	"
50.0 "	5.0 "	2.5 "	20.0 "	"	"
14.5 "	2.0 "	7.0 "	13.0 "	73.8.10 75.9.13	"
18.0 "	2.0 "	6.0 "	9.0 "	73.3.26 75.3.25	"
15.0 "	2.0 "	7.0 "	9.0 "	"	"
12.0 "	2.0 "	8.0 "	10.0 "	"	"
16.0 "	2.0 "	4.5 "	13.0 "	73.5.3 75.5.6	"

◎서울특별시고시제 12호

도시계획(전기공급설비:변전소) 시설결정과지적승인
 1.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변전소) 결정과 지적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와 동법제 13조 및 건설부고시제 123호(73

4.4)에 의하여 이를 표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서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2. 4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변전소) 조서

사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전기공급설비 (변전소)	서대문구 순화동 212-1	1,070 (325명)	

별첨: (도면생략)

도면은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와 서대문구청시민봉사실에보관

◎서울특별시고시제 13호

도시계획시설(시장)변경결정및지적승인
 1. 도시계획시설(시장) 결정 및 지적승인변경을 다음과같이하였기 도시계획법제 12조 및 동법제 13조의 건설부고시제 123호(73.4.4)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성동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4. 2. 5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 시장시설조서

사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복 도시 장	성동구성수동 2가 335-47 부근 339-5	1,338명 1,289명	변경 전 변경 후

별첨: (도면생략)

도면은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와 성동구청 시민봉사실에보관

<p>◎ 서울특별시 고시 제 14 호</p> <p>도시계획 (유수지) 시설변경 결정 과 처제 승인</p> <p>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유수지) 변경결정과 지적승인을 다음과 같이 하 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와 동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6 호 (74.1.5) 의 권한 가. 도시계획 (유수지) 시설변경조서</p>		<p>위임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 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시민 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의 이 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p> <p>1974. 2. 5</p> <p>서울특별시 장</p>							
<p>용도 및 시설명</p>		<p>위 치</p>	<p>면 적</p>	<p>비 고</p>					
<p>변경 전</p>	<p>변경 후</p>								
<p>목동분노 중말처리장</p>	<p>신도림동 유수지</p>	<p>신도림동 320번지일대</p>	<p>47,413</p>						
<p>나. 카로신설 및 폐지조서</p>									
구분	등급	류별	번호	층원	연 장	시	집	중	점
폐지	소로	3		6	458	신도림동	276-1	신도림동	309-3
"	"	2		8	260	"	322-2	"	300-1
"	"	2		8	40	"	301	"	304-1
신설	"	2		8	480	"	312	"	271-34
<p>비첨: 도면은 당시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영등포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함</p>									
<p>◎ 서울특별시 고시 제 15 호</p> <p>재개발사업시행자지정승인고시</p> <p>1. 건설부 고시 제 368 호 (73.9.6)</p> <p>로 재개발 구역이, 결정고시된 소공 제 1 지구의 2 개지구의 재개발사업 시</p>		<p>행과 허가를 도시계획법 제 24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p> <p>1974. 2. 6</p> <p>서울특별시 장</p>							

2. 고 시 내 용

지 구 명	지정면적	승 인 내 용			비고
		공구명	면 적	시 행 자	
소 공 재개발지구	13,220 (4,000명)	소 공 1 지구	4,630 (1,400명)	태평개발주식회사 종로구수송동 28외 2 남 중 연	
태평로 2가 재개발지구	31,400 (9,500명)	태평로2가 2 지구	7,400 (2,200명)	동방생명보험 주식회사	
남대문로 3가 재개발지구	9,400 (2,800명)	남대문로3가 2 지구	3,000 (900명)	기독교 감리회 유 지 재 단	

㉔ 서울특별시고시제 16호

도시계획(유수지)시설변경결정과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시설(유수지)시설변경결정과 지적승인용 다음과 같이 하
였거 도시계획법 제 12조와 동법제 13
조 및 건설부고시제 6호(74.1.5) 외 권

한위일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당시 도시계획국 도
시계획과와 용산구청 시민봉사실에 비
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
이게 한다.

1974. 2. 7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유수지)시설변경조서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전	변 경	변 경 후	
용산제 1 유수지	용산구한강로3가 33번지주변	25,022	986	26,008	
용산제 2 유수지	2번지주변	3,603	952	4,555	
용산제 4 유수지	신재동 42 원호3가 53) 주변	5,381	1,740	7,130	

비고: 도면은 당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용산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
함

공 고		공고원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의 응시원서 접수기간과 시험일 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서울특별시 공고제 19 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변경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 3 호 (74. 1. 9)로		74. 1. . . 서울특별시 장	
1. 시험 구분			
연월일	종류	응시원서 접수기간	시험 일자
1	종보통	1. 시험 실시일시 10 일 전부터 시험 실시 1 일 전 12 시까지 2. 단, 공휴일은 제외	3. 9월의 첫째 화요일
목	수	위와 같음	3. 9월의 내째 목요일
2	종소형	·	3. 9월의 둘째 목요일
1	종대형	·	4. 10월의 첫째 화요일
2	종보통	·	4. 10월의 셋째 화요일
2	종원동기	·	매주 금요일
○ 서울특별시 공고제 23 호 환지처분공고 (양우동지구확정리지구)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3.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별도 통지할 것이나 송달되지 않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4. 동지구내에 일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 (80,617.60평) 에 대한 환지처분은 공시완료 및 확정속량 시행시까지 이를 보류한다. 첨부: 도면 및 조서 (생략) 1974. 2. . . 서울특별시 장	
1.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양우동지구 확정리지구내에 공사가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별첨 환지 확정지정도서와 같이 환지 확정처분이 되었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61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2. 환지 확정 지정도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지구획정리 제 1 과 및 동대문구청 시민봉사실에서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4 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
지정업체대체 지정 공고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지정업체의
변경사항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지정업체지정 및 자금지원요령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하고 다음
과 같이 대체 지정 공고한다.

1974. 2. . . .

서울특별시 장

대 체 지 정

변 경 전					변 경 후				
지정 번호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 품명	지정 번호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수출 품명
471	희재물사	박준식	성동구 용 익동 398	색 타 수원물	471	주식회사 하이체산 상	박준식	성동구 용 익동 398	색 타 수원물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6 호

쓰레기특별청소계획의
(비수거) 지역공고

오물청소법 제3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특별청소지역에서

제외되는 쓰레기의 비수거지역을 지
정하고 동법시행 규칙 제1조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4. . . .

서울특별시 장

구 및 출장소	동 명	종	구 및 출장소	동 명	종
동대문	망우동 신내동	지 지역	천호출장소	안상동 방이동	전 지역
성동 도봉	장안동 공릉동 상계1동 상계2동 중계동 도봉동	"	영등출장소	잠실동 일원동 세곡동 도곡동 내곡동 서호동	"
천호출장소	영일동 길동	"	잠암 원재 양재	동 동 동	"
			계	23개 동	

사 명

© 1974.2.5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성북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성북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서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2 호봉을 급함.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용산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성 연 재

김 진 수

김 진 우

성 금 화

이 수 희

백 은 희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양동포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소 결 순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아동병원 근무를 명함.

양서관장소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하수과파견 근무를 명함.

상서관장소 지방간호지원보시보에 임함.

남부농지사업소파견 근무를 명함.

김 단 글

지방공신사보시보에 임함.

1 호봉을 급함.

방호담당재직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 제1부시장 1 남 상 금 수

경상남도 지사에 보함.

경상북도지사 이사관 1 남 수 희

관리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제1부시장에 보함.

1974년 2월 5일

대 통 령

<p>내무국 지방서기관 새마을지도자 서기관에 임함. 2 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 내무국 새마을 지도과장에 보임. 내무국시민과 지방서기관 서기관에 임함. 5 호봉을 급함. 서울특별시 내무국 시민과장에 보임.</p>	<p>문무봉</p>	<p>수의수원지사무소파견 근무를 명함. © 1974.2.10 전북고장군 주사보 한재연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6 호봉을 급함. 관악구 근무를 명함.</p>
<p>1974년 2월 5일</p>		<p>© 1974.2.15</p>
<p>성북구 지방행정 사무관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p>	<p>김경현</p>	<p>신남 지방농림 합평군해보면 기원 윤석우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농림기원에 임함. 6 호봉을 급함. 북부농지사업소 근무를 명함.</p>
<p>서대문구 지방행정 사무관에 임함.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에 의하여 파면에 처함.</p>	<p>이경구</p>	<p>경기도동부 지방농림 사무관리소 기사보 안희역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농림기사보에 임함.</p>
<p>윤영출장소 지방농림 사무관에 임함. 농지과파견 근무를 명함.</p>	<p>유관운</p>	<p>6 호봉을 급함. 북부농지사업소 근무를 명함.</p>
<p>관악구 지방토목 사무관에 임함.</p>	<p>김종길</p>	<p>경기도파주군 지방농림 사무관에 임함. 윤국균</p>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농림기사보에 임함.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9호봉을 급함.	3호봉을 급함.
영등포구 근무를 명함.	중구 근무를 명함.
산림청 중부령 인계관리소 임기사보 이 제형	경남울산시 지방행정 주사 보 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입을 명함.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농림기사보에 임함.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4호봉을 급함.	3호봉을 급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 (은평출장소) 근무
경기도 지방보전 기령군보전소 기사보	배봉구 명함.

서울특별시장